

## 13. 몰도바(Moldova)

### 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6년(국가연금), 1964년(농민조합 소속 연금과 수당)
- 현행법 : 1998년(사회보험급여), 2004년 개정; 1999년(공공사회보험제도) 2000년(사회보험); 2001년 (연금계산), 2008년(공무원)

### 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, 사회부조
  - ※ 2016년 사회보험법 적용범위가 공무원까지 확대됨

### 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 - 당연적용 : 고용근로자, 농업근로자, 특정 자영자, 특정 공무원
  - 공무원, 군인, 내무부 근로자의 경우 특별제도 적용
- 사회부조 : 몰도바 거주자

### 4. 자원조달

- 가입자
  - 사회보험
    - 월 소득의 6%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액은 없음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소득액은 법적 월 평균임금의 5배
      - ※ 법적 월 평균임금은 4,500 lei
   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수당, 출산급여, 실업급여, 가족수당의 현금급여를 위한 재원이 됨
 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 - 사회보험
    - 연 정액보험료는 7,512 lei, 농지소유자는 1,920 lei
   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질병수당, 출산급여, 실업급여, 가족수당의 현금급여를 위한 재원이 됨
  - 사회부조 : 없음

### 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 - 산업부문의 경우 임금지급총액의 23%, 농업부문의 경우 16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액 및 최고소득액은 없음
  - 사용자의 납부 보험료는 질병수당 및 출산급여, 산재급여, 실업급여, 가족수당, 사망 위로금의 재원이 됨
- 사회부조 : 없음

### ○ 정 부

- 사회보험
  - 농업부문의 경우 월 6% ; 사용자로서 보험료 지급
  - 정부 기여금은 질병수당 및 출산급여, 산재급여, 실업급여, 가족수당, 사망 위로금, 농업근로자들의 가족수당의 재원이 됨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액 및 최고소득액은 없음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### 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#### ○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가입기간이 33년 6개월 이상인 62.4세 도달자(남성, 2019년까지 점차 63세로 상향, 가입기간요건은 2018년 기준 34년으로 상향조정; 가입기간이 30년 6개월 이상인 57.6세 도달자(여성, 2028년까지 점차 63세로 상향, 2024년까지 가입기간요건은 34년으로 상향조정)
  - 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·양육한 여성으로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인 54세 도달자
- 부분연금 :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62.4세 남성 (2019년까지 점차 63세로 상향), 57.6세 여성(2028년까지 점차 63세로 상향)
- 상호협정에 따라 노령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

#### ○ 노령연금(사회부조)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.4세 남성(2019년까지 점차 63세로 상향), 57.6세 여성(2028년까지 점차 63세로 상향)
- 노령사회연금은 해외지급 불가

#### ○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며 아래 장애등급으로 판명된 자
  - 1 그룹 : 업무수행능력이 상실되고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
  - 2 그룹 : 업무수행능력은 상실되었으나 상시 간병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

- 3 그룹 : 일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 - 장애발생 연령에 따라 가입기간요건이 상이함
    - 23세 미만은 1년 이상; 23세~28세는 4년 이상; 29세~32세는 7년 이상; 33세~36세는 10년 이상; 37세~40세는 13년 이상; 41세 이상인 경우 15년 이상
    - 국가 장애 및 업무능력 평가위원회(the National Council for Determining Disability and Work Capacity)는 업무능력상실여부를 판단함
      - 상호협정에 따라 장애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
  - 업무와 관련된 장애인 경우, 산재급여는 노령연금 · 장애연금 · 유족연금 급여를 보충함
- 장애연금(사회부조)
- 아동기에 중증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자; 18세 미만으로 중증의 심각한 장애 또는 중간 수준의 장애를 가진 자; 장애연금(사회보험)을 위한 가입기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장애등급이 1그룹, 2그룹 또는 3그룹으로 판명된 자
    - 장애연금(사회부조)은 해외 지급 불가
- 간병인 수당(사회부조) :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이나 아동기에 발생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 또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맹인을 간병하는 자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- 사망 당시 가입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(사회보험)을 수급하였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자
  - 수급가능유족 : 사망자와의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또는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용되지 않은 57.4세(홀아비), 52.6세(미망인) 도달자; 18세 미만 고아 (학생인 경우 23세,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)
    - 유족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지급정지
    - 상호협정에 따라 유족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
- 유족연금 (사회부조) : 가족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이 사망하고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(사회보험)의 가입기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,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됨(학생인 경우 23세)
- 유족사회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
- 사망 보조금(사회보험) :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, 또는 사회보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됨. 급여는 자격이 되는 유족, 지정된 유족, 또는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지급됨.
- 사망 보조금(사회부조) : 어떤 자가 사망하고 그/그녀가 사망보조금(사회보험)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됨. 급여는 자격이 되는 유족, 지정된 유족, 또는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지급됨.

## 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- 가입자의 월평균소득 기간의 1.35%에 납부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
    - 월평균소득은 1999.1월 이후 총 납부 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임
    - 소득 상하한액 제한 없음
    - 연금최저월액은 961 lei; 연금월액의 상한 제한 없음
  - 부분연금 : 가입기간이 32년 6개월 미만(남성, 2018년까지 34년으로 상향) 또는 30년 6개월 미만(여성, 2024년까지 34년으로 상향)인 경우, 연금액은 가입기간 연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
  - 급여조정 : 4월에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및 평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조정
- 노령연금(사회부조): 월 153.95 lei 지급
- 급여조정 : 4월에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및 평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조정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- 월 평균기준소득, 가입기간, 측정 장애 관련 계수를 기초로 연금액 산정
  - 계수 : 장애 1그룹(0.42), 장애2그룹(0.35), 장애3그룹(0.2)
  - 월 최저연금 : 720.25 lei(1그룹), 672.70 lei(2그룹), 480.50 lei(3그룹) (2018.4월 기준 각 768.75 lei, 717.50 lei, 512.50 lei로 변경)
  - \* 연금월액의 상한 제한 없음
  - 급여조정 : 4월에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및 평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조정
- 장애연금(사회부조)
- 18세 미만 혹은 유년기에 발생한 중증 장애인 경우 월 615.80 lei; 심각한 장애인 경우 월 574.75 lei; 보통 수준의 장애인 경우 월 410.54 lei
  - 가입자가 1그룹 장애 판정을 받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202.51 lei 지급; 2그룹인 경우 195.55 lei; 3그룹인 경우 137.70 lei
  - 급여조정 : 4월에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및 평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조정
- 간병인 수당 : 월 769.76 lei 지급

- 급여조정 : 4월에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및 평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조정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를 각 유족에게 지급
    - \* 유족연금 상하한액 제한은 없음
  - 급여조정 : 4월에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및 평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조정
- 유족사회연금(사회부조) : 각 고아에게 307.90 lei 지급되며 완전고아에 대한 연금액은 2배로 지급
  - 급여조정 : 4월에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및 평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조정
- 사망보조금(사회보험,사회부조) : 1,100 lei를 일시금으로 지급
  - 급여조정 : 4월에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및 평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조정

## 7. 관리운영기관

- 건강·노동·사회보호부(Ministry of Health, Labor, Social Protection) :사회보장정책 관리
- 사회보험 국가사무소(National Office of Social Insurance) : 제도 운영

<2018년 ISSA 자료>